

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량조사 방법(제63조제4항 관련)

1. 조사 항목: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특정수질유해물질
2. 조사 방법: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농도와 유량은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

3. 조사 횟수

조사대상별 구분	측정횟수
가. 영 별표 13의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사업장	분기 1회
나. 가목에 따른 사업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1.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사업장 2. 공동방지사설에서 처리하는 사업장 3.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는 사업장	반기 1회
다. 영 별표 13의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따른 제3종 사업장	반기 1회